

간행물발간등록번호

11-1342080-000002-14



청렴의무위반 **소청사례집**

2018. 9.

Appeals Commission For Educators



횡령



회계문란



절도



사기



청탁

금품수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Appeals Commission For Educators

공금유용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교원의 징계 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권익 보장과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갑질 등’ 부정·부패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고 교원에 대하여 보다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청렴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후 우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사례는 줄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그간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처분 받은 교원의 소청심사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하여 반면교사로 삼음으로써 교원의 청렴의식을 제고 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 사례집이 교원의 청렴의식을 내재화하고 교육계의 청렴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결정을 통하여 교원의 권익 구제와 신분 보장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8.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이 조우

일러두기

- 본 소청사례집에 수록된 결정 사례는 지난 3년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징계 처분 소청사건 1,274건 중 청렴의무 위반 사례로 교원과 교육관계자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중요사례 20건을 엄선한 것입니다.
- 이 책에서는 소청 사건 20건을 청렴의무 위반의 대표적인 비위 유형인 금품수수(10건), 횡령(3건), 청탁(2건), 사기(2건), 회계문란·절도·공금 유용 각 1건의 비위유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본 사례집은 각 사건별로 결정 내용에 앞서 처분요지(또는 쟁점사항), 결정요지, 관련 규정을 별도로 게재하여 사건의 쟁점 파악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부록 1>에는 2018. 1. 17. 개정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Q&A)’ 코너를 ‘적용대상별’로 신고,
- <부록 2>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을 수록하였습니다.
- 본 청렴의무 위반 소청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누리집(www.ace.go.kr)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례집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행정지원계로 연락(전화 044-203-7441)하시기 바랍니다.

I. 횡령 3건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원처분 이유요지	직급	결정	쪽
1	2015-000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부당 지시(허위 지출품위)를 통한 공금 횡령, 학생 격려 상품권 등 횡령	교장	기각	010
2	2016-000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청구	국외 여비를 횡령하고 여행 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함	교수	기각	015
3	2016-000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취소 청구	유치원 간식비와 운영비를 횡령하고 단시간근로자 급여 및 수당을 허위 지급	교사	처분	020

II. 회계문란 1건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원처분 이유요지	직급	결정	쪽
1	2016-000	해임 처분 취소 청구	부당 진료, 진료기록 누락, 성희롱, 연구비 부당집행 및 복무 관리 불성실	교수	기각	028

III. 절도 1건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원처분 이유요지	직급	결정	쪽
1	2016-000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취소(감경) 청구	학교 행사용 공용 물품을 반출하여 사적 사용함	교사	기각	038

IV. 사기 2건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원처분 이유요지	직급	결정	쪽
1	2014-000	해임처분 취소 청구	정부 재정지원 사업 및 연구사업 수행 중 허위 문서 작성으로 사업비 편취	교수	기각	043
2	2016-000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주식투자를 명목으로 동료 교사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	교사	기각	049

V. 청탁 2건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원처분 이유요지	직급	결정	쪽
1	2016-00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교구 구매를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토록 부정 청탁	교장	기각	054
2	2016-00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교구 구매를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토록 부정 청탁	교감	기각	058

VI. 금품수수 10건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원처분 이유요지	직급	결정	쪽
1	2015-000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취소 청구	교사들에게 명절선물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여 금품수수	교감	기각	064
2	2017-000 ~000	파면 등 처분 취소 청구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및 청렴의무 위반	부교수	기각	067
3	2016-00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수상을 매개로 금품제공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수수하여 청렴의무위반	장학사	기각	074
4	2016-000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취소 청구	명절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하여 청렴의무 위반	교사	기각	077
5	2016-000	파면처분 취소 청구	학교 기숙사 신축을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증거 위조	교수	기각	082
6	2015-000	파면처분 취소 청구	짚은 수업결강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였고, 학생들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및 학점 부여	부교수	기각	087
7	2016-000	해임 처분 취소 청구	학부모로부터 3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함	교사	기각	096
8	2015-000	해임처분 취소 청구	교직원에게 사적 업무를 강요하고, 무이자로 금전 차용 및 폭력 행사	교장	기각	100
9	2015-000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처분 취소 청구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음	교사	기각	105
10	2015-000	견책처분 취소 청구	교직원에게 금품을 수수	교장	기각	110

VII. 공금유용 1건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원처분 이유요지	직급	결정	쪽
1	2016-000	해임처분 취소 청구	교원노조 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등 유용	교사	기각	116

부록. 1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Q&A)	123
------------------------	-----

부록. 2

I.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32
II.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4
III.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156



횡령
3건

사건 1

2015-○○○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 처분 요지** 부당 지시(허위 지출품위)를 통한 공금 횡령, 학생 격려 상품권 등 횡령
- 결정 요지** 처분 사유는 사실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원 처분은 과중하지 않음
-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무)

청 구 인 : ○○○

소속 ○○초등학교 직위 교장

피청구인 : ○○교육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가. 부당 지시(허위 지출품위)를 통한 공금 횡령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2012. 10월부터 2013. 10월까지 ○○교육지원청 간부 및 교직원들에게 총 1,382,000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지급하고 허위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선물비용을 보전하였다.

나. 학생 격려 상품권 횡령 등

1) 2012년부터 2013년도 다문화 거점 학교를 추진하면서 다문화 가정 격려 농협상품권 중 금 600,000원 상당을 횡령하여 개인용으로 사용하였다.

2)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우수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학생에게 지급하고 남은 상품권 증 금 840,000원 상당을 교직원 영화관람 및 개인용으로 사용하여 회계집행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다. 회계변칙 집행 등

2012. 12월 스포츠 강사 지도수당을 변칙으로 집행하였고, 2013년 여름방학 캠프 시에는 방과후학교 수당을 허위로 처리하여 친목회비 경비로 사용하였다.

라.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같은 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및 제78조의 2(징계부가금)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1배(금 1,982,000원)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부당 지시(허위 지출품의)를 통한 공급 횡령 등

청구인은 2012. 10월부터 3회에 걸쳐 명절선물 구입을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의 지출품의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학생 격려 상품권 횡령 등

1)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상품권 횡령

청구인의 생활 근거지인 ○○에서 위 상품권 32장이 사용되었다거나, 청구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문화가정에 80만원을 보전하여 준 것은 청구인의 상품권 횡령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학생 시상품 임의사용 및 사적사용 등

청구인이 2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임의의 용도에 사용한 것은 항목유용에 해당하여 정당한 것이고, 교감이 84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직원 영화관람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청구인과 관련 없는 사안이다.

다. 회계변칙 집행 등

스포츠 강사 지도수당이나 방과후학교 지도 수당 등이 허위로 지급된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해관계가 없고 이를 알지 못하였다. 즉, 청구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부당 지시(허위 지출품의)를 통한 공금 횡령 등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2012. 10월부터 2013. 10월 까지 3회에 걸쳐 ○○교육청 간부들과 교직원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교감에게 멸치를 구입하도록 지시하였고, 교감 문○○는 교사 이○○에게 선물구입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선물 구입대금을 보전하기 위해 학교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표 1]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함께 1,382,000원을 횡령하여 교직원 등 선물비(멸치, 농협상품권)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표 1] 부당지시(허위 지출품의)를 통한 공금횡령 명세

일 시	품의내역	횡령액(원)	사용용도(구입품목)
2012.10.29.	창의경영학교 물품 구입	462,000	추석명절 선물(멸치 구입)
2013.1.16.	제49회 졸업식 준비 물품 구입	340,000	설 선물(농협상품권 구입)
2013.10.11.	창의경영학교 운영 물품 구입	580,000	추석 선물(농협상품권 구입)
합계		1,382,000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명절선물 구입을 교감에게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구입비용을 허위의 지출품의를 통하여 마련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감과 교사 모두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허위의 지출 품의를 하고 이를 통해 선물의 구입비용을 마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회계집행의 최종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선물을 구입하여 배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학생 격려 상품권 횡령 등

가)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상품권 횡령

(1) 피청구인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청구인의 문답서 및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년도 명절(설, 추석)에 다문화 가정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2회에 걸쳐 1,300,000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농협 ○○지점에서 구입하였고, 농협상품권이 사용된 장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거주지(○○) 및 ○○, ○○ 등에서 사용되었다.

(2)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대상 학생의 학부모 통장계좌로 뒤늦게 입금한 정황 등으로 보건데 청구인이 금 600,000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횡령하여 개인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학생 시상품 임의 사용 및 사적사용 등

○○초등학교에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우수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상품권을 구입한 후 학생에게 지급하고 남은 상품권 금 840,000원 상당을 교감 ○○○가 교직원 영화관람 및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청구인이 학교관리자로서 회계집행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3) 회계변칙 집행 등

가) ○○초등학교에서는 2012학년도 겨울방학 중 10일간 육상부 동계 강화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스포츠 강사 ○○○를 지도강사로 채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면서 허위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회계를 변칙으로 집행함으로써 위 ○○○로부터 지도수당 이외에 금 400,000원의 부당한 급여를 추가로 지급 하였다.

나) 또한, 2013학년도 여름방학에 각종 캠프를 운영하면서 교사 ○○○ 등 3명의 지도시간을 부풀려 금 404,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교감 ○○○가 이를 편취하여 친목회 경비로 사용하게 하였다.

다) 청구인은 스포츠 강사 지도수당이나 방과후학교 지도 수당 등이 허위로 지급된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없고 이를 알지 못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학교의 관리자로서 회계집행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청구인의 부당지시를 통한 공금 횡령, 학생 격려 상품권 횡령, 회계변칙 집행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감봉3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부가금 적정 여부

1) 청구인이 ○○교육지원청 간부 및 교직원들에게 금 1,382,000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지급하고 허위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선물비용을 보전한 징계사유와 다문화 가정 격려 농협상품권 중 금 600,000원 상당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징계부가금 1배(금 1,982,000원) 처분을 받았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비위를「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3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하여 관련규정의 범위 안에서 최소 수준인 1배로 의결한 것이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당지시를 통한 공금 횡령, 학생 격려 상품권 횡령, 회계변칙 집행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2

2016-○○○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청구

- 처분 요지** 학과 단기연수를 추진하면서 국외여비를 횡령하고 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함
- 결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도 과중하지 않음
-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부 공무원 행동 강령」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청 구 인 : ○○○

소속 ○○대학교 직위 교수

피청구인 : ○○대학교총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청구인은 2014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학과 단기해외연수 재학생 인솔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국외여비를 ○○대학교로부터 2014년 10월 7일 및 2015년 10월 13일 2회에 걸쳐 각각 4,534,720원과 4,608,180원 등 총 9,142,900원을 수령하고, 여행업체에 납부해야 할 1인당 여행경비 8,6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국외여비를 횡령하고 여행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부 공무원행동강령」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배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이에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2배(17,20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대학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은 후 1인당 여행경비를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경비의 처리를 유보하고 있었고, 연수 후에도 업무와 압투병 등으로 정신이 없어 경비 지급문제를 잊고 있었다.
- 나. 「국가공무원법」제61조 및 「○○부 공무원행동강령」제14조 위반에 해당하려면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였어야 하는데, 청구인과 여행사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여행사로부터 항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행위를 직무와 관련한 향응의 수수로 볼 수 없고, 여행사가 연수의 총괄책임자인 청구인에게 숙박과 항공을 제공한 것은 대학과 여행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것이다.
- 다. 「○○부 공무원행동강령」제7조는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것을 요구하는데, 청구인은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경비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감사를 통하여 여행사에 경비를 이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즉시 여행사에게 지급할 경비를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바 없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원래 지급할 금액만큼을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라. 청구인은 지금까지 ○○의 개발과 ○○육성, ○○산업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실, 현재 본인의 과실로 국외여비의 처리가 늦추어지고, 일련의 사태가 초래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술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보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내지 부당하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는 청구인이 2014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학과 단기해외연수 재학생 인솔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국외여비를

○○대학으로부터 2014년 10월 7일 및 2015년 10월 13일 2회에 걸쳐 각각 4,534,720원과 4,608,180원 등 총 9,142,900원을 수령하고, 여행업체에 납부해야 할 1인당 여행경비 8,6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국외여비를 횡령하고 여행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 1) 청구인이 대학으로부터 수령한 여행경비 중 여행업체에 지급해야 할 8,6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업체로부터 항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음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달리 주장하고 있는 바가 없다.
- 2) 청구인은 여행업체에 여행경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학교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은 후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고 연수를 실시한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감사로 인하여 여행경비를 여행업체에 지급하게 된 것은 해외연수를 실시한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점 및 그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단순한 과실로 해당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나아가 청구인에게 해당 금원을 횡령할 의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3) 청구인은 여행사로부터 항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행위를 직무와 관련한 향응의 수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에 따르면 ‘직무관련자’의 범위에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판례에 따르면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여행업체는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재학생의 단기해외연수 일정을 최종결정하며 그 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직접 인솔하는 총괄책임자로서 여행

업체와 연수일정 등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해외연수에 관한 직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여행업체는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여행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은 청구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청구인은 이 사건 감사가 시작된 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여행경비를 여행사에 지급하였으므로 대학으로부터 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바 없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원래 지급할 금액만큼을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대학으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아 여행사에 지급하기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기간 및 그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해당 금원을 임의로 소비할 의도로 보관하고 있었음이 상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추후 해당 금원의 반환 여부는 비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와 같이 청구인이 해당 금원을 횡령할 의사로 보관하고 있었다면, 학교 측에 이와 관련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 16274 판결 참조).

- 2)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①「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징직 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비위는 횡령 액수와 그 발생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대학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하는 청구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사명감, 성실성이 요구되는 점, ③「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공금 횡령과 관련된 비위는 감경할 수 없는 점 ④ 교직사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관련 비위를 엄단할 필요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의 적정 여부

-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금 횡령 및 향응 수수 등의 경우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누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2) 위 규정에 의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시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이, 공금 횡령·유용 시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이 각 예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비위 및 과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적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도 과중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3

2016-○○○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취소(감경) 청구

처분 요지 유치원 종일반 간식비를 집행하면서 간식비에서 5,073,000원을, 운영비에서 1,754,880원을 횡령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급여 및 수당을 허위 지급함

결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처분은 적정함. 부과된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징계부가금 2배 처분으로 변경함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청 구 인 : ○○○

소속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직위 교사

피청구인 : ○○교육감

주 문

청구인의 정직 3월 처분 취소(감경)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징계부가금 대상 금액 : 9,300,370원) 3배 부과 처분을 징계부가금(징계부가금 대상금액 : 6,827,880원) 2배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가. 공금 횡령(총 921건 9,300,370원)

- 1) 청구인은 2013. 3월부터 2015. 10월까지 유치원 종일반 간식비를 집행하면서 개인적인 식료품 및 가정용 물품을 함께 구입한 후 사후 품의를 하는 방식으로 총 871건 6,840,290원을 횡령하였다.
- 2) 청구인은 2013. 5. 31.부터 2015. 9. 1.까지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개인적인 물품을 함께 구입한 후 사후품의를 하는 방식으로 총 50건 2,460,080원을 횡령하였다.

나. 급여 및 수당 허위지급 등

- 1) 청구인은 전 초단시간근로자 ○○○(유치원○○교사)의 근무상황부를 조작하여 2015년 6~7월(2개월) 급여 및 초과근무수당 300,000원을 과 지급한 후 해당 금액을 다시 본인의 계좌로 이체 받았으며, 현 초단시간근로자 ○○○(유치원○○교사)의 근무상황부를 조작하여 2015년 11월 급여 및 초과근무수당 160,000원을 과지급한 후 170,000원을 현금으로 갈취하는 등 근무상황부 조작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급여 및 수당을 과지급한 후 해당 금액을 다시 빼앗고, ○○○으로부터 1만원을 갈취하였다.
- 2) ○○○과 ○○○에게서 받은 총 470,000원은 2015. 4월부터 6월까지 외상으로 구입한 유치원 교구(블록세트, 실의 의자)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금횡령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치원 종일반 간식비와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일부 개인적인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함께 구입하여 횡령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유치원 종일반 간식비 횡령내역 중 2013년 499,480원, 2014년 1,283,310원, 2015년 658,310원은 요리활동과 역할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것이며 실제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후 보관하고 있는 물품들이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여 주기를 요청한다.

나. 급여 및 수당 허위지급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유치원에서 필요한 교구들을 현금가로 저렴하게 외상으로 구입한 뒤 외상비용을 결제하기 위해 초단시간근로자들의 근무상황부를 조작하여 급여를 과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외상대금을 변제한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갈취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현재 7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자신이 처한 환경이 매우
어려워 불미스러운 비위행위를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감경)하여 주길 바란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공금 횡령 여부 관련

가)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직원들의 사실
확인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 3월부터 2015. 10
월까지 유치원 종일반 간식비를 집행하면서 개인적인 식료품 및 가
정용 물품을 함께 구입한 후 사후 품의를 하는 방식으로 5백여 만
원을 횡령한 사실, 2013. 5월부터 2015. 9월까지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개인적인 물품을 함께 구입하는 방식으로 2백여 만 원
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
은 유치원 종일반 간식비 횡령내역 중 일부(2013년 499,480원,
2014년 1,283,310원, 2015년 658,310원)는 요리활동과 역할활
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요리활동 근거자료 중 2015년 결재 받
은 주간교육계획안에 요리활동이 전혀 명시된 바가 없고, 요리활동
을 본 적이 없다는 교직원들의 사실확인서, 2014-2015년 교육활
동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간식비 횡령액 중 요리활동과 역할놀이에 필요한 물품도 함께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일부 확인된 물품이나 횡령여
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금액(1,767,290원)¹⁾을 횡령액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금액(2,441,100원) 중 요리활동과 역할놀이에 필요한 물품으로
인정되는 금액(1,767,290원)을 횡령액에서 제외

[표 1] 유치원 종일반 간식비 횡령내역

구분	횡령액(원)	불인정액(원)	징계부가금 대상금액(원)
2013학년도	2,181,630	499,480	1,682,150
2014학년도	3,002,710	1,267,810	1,734,900
2015학년도	1,655,950	0	1,655,950
합계	6,840,290	1,767,290	5,073,000

다) 또한, 유치원 운영비 횡령내역(2,460,080원) 중 일부는 실제 유치원에서 사용된 물품이나 보관 중인 물품도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치원 운영비 부적정 운영내역’ 중 일부(2013년 162,200원, 2014년 372,100원, 2015년 170,900원)는 실제 유치원에서 사용된 물품(기능성 바지 등)이거나 보관 중인 물품들(캠핑의자, 카페트, 커튼-봉세트, 매트리스 커버, 여름용 이불 등)로 확인(갑제15호증)되는바, 총 705,200원을 횡령액에서 제외한다.

[표 2] 유치원 운영비 횡령내역

구분	횡령액(원)	불인정액(원)	징계부가금 대상금액(원)
2013학년도	622,140	162,200	459,940
2014학년도	1,455,740	372,100	1,083,640
2015학년도	382,200	170,900	211,300
합계	2,460,080	705,200	1,754,880

라) 청구인이 유치원 종일반 간식비와 유치원 운영비 횡령내역 중 일부는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하였으나, 공금 횡령액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함께 구입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급여 및 수당 허위지급 여부 관련

가)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상황부를 조작하여 초단시간근로자의 급여 및 수당을 과지급한 후 이들에게서 받은 총 470,000원을 외상으로 구입한 유치원 교구(블록세트, 실외 의자)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초단시간근로자들의 급여 및 수당 허위지급에 대해 유치원 교구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해당 근로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들의 동의를 구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여 불법 지출함으로써 학교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청구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모두 파면까지 예정되어 있는 점,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구인이 유치원 원아들의 간식비와 운영비를 횡령하고,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여 불법 지출함으로써 학교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교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정 여부

1)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의 기준에 따라 공금 횡령 총 금액 9,300,370원에 대해 징계부가금 3배(27,901,11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금 횡령액 중 간식비 1,767,290원, 운영비 705,200원은 징계부가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징계부가금 대상이 되는 금액은 총 6,827,880원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서 공금 횡령·유용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2~3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3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과중해 보인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 사건 정직 3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I

⋮

회계문란

1건

사건 1

2016-○○○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요지 부당 진료, 진료기록 누락, 성희롱, 연구비 부당집행 및 복무 관리 불성실

결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음

관련 규정 「의료법」제27조 제3항 및 제22조(진료기록부등) 제1항,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대학교 외부 연구비 관리지침」제21조(연구비 집행기준 일반사항)

청 구 인 : ○○○

소속 ○○대학교 직위 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학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가. 청구인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전문 진료과목(보존과)이 아닌 보철과 치료를 실시하면서 진료기록을 누락하고 진찰료, 기공료를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등 진료비를 미수납한 사실이 있다(제1징계사유).

나. 청구인은 여성 전공의 및 치위생사에게 술자리 강요, 귀가 시 동승 강요, 술자리에서 욕설, 언어적 성희롱, 신체접촉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제2징계사유).

다.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4건의 국가연구과제비 집행과정에서 유흥점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식당 영수증으로 발급받고, 허위 회의

록 작성을 통해 12회에 걸쳐 3,274,000원의 연구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제3징계사유).

라. 청구인은 진료시간에 늦은 횟수 38회, 무단결근 회수 3회 등 근태 관리에 성실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제4징계사유).

마.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 없이 동료교수의 지인 무료진료 여부 확인을 위해 ○○○, ○○○ 교수의 의료기록을 열람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제5징계사유).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대학교병원 보존과 과장으로 ○○○ 병원장과 병원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청구인에 대한 징계 절차가 회부되기 전에 ○○○ 병원장은 청구인을 개인적으로 불러 무료진료 행위를 한 것들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사직을 강요하였으나 청구인이 교직원 및 가족들에게 무료 진료를 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 원장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인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였다.

나.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계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고자 ○○ 대학교에 2015. 2. 25. 징계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2015. 3. 30. 징계사유(징계혐의사실)를 기재한 설명서만이라도 열람 및 복사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2015. 4. 17. ○○대학교 감사원장으로부터 문답조사 출석 요청서를 받을 때까지 징계사유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그 이후에도 징계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징계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일체 받지 못하여 적절히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병원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 의결요구 사유를 재조사하여 확인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청구인이 1년에 한 두 명 정도 병원 직원(또는 그들의 가족)이나, 청구인의 지인, 가족을 치료해주면서 '0원 접수' 코드에 따라 초진료 또는 재진료비와 인건비 성격의 진료비를 받지 않고, 실비성격의 기공비(재료비)만을 지급받고 치료를 해준 적이 있으나, 청구인이 지인 및 가족 등에게 무료 진료행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단 1원도 없다.

또한 청구인을 비롯한 다른 많은 교수들이 가족, 지인 또는 병원 직원 가족에게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가는 상황이며, 청구인은 1년에 한 두 명 정도 병원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진료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며, 병원 측에서 무료진료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한 후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라.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청구인이 여성 전공의 및 치위생사에게 술자리 강요, 성희롱 및 폭언, 신체접촉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행위들은 청구인이 입에조차 담고 싶지 않은 행위들이며, 아무런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험담 수준의 소문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의 자료는 오로지 청구인 주변인물 2~3명(○○○ 위생사와 ○○○ 전공의 등)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술자리를 강요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및 폭언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징계처분 사유서에는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식당 영수증으로 발급받았다는 사유와 관련하여 '○○○'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며, 음식점 사장이 '△△'이라는 식당의 상호를 2013. 5. 30. '○○○'로 변경하였는데, 세무서에서 매출전표상 '△△'으로 계속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여 계속 사용해 온 것으로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연구비를 사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식당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허위 회의록 작성을 통해 연구비를 사용하였다고 했는데, 청구

인은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피청구인이 회의록의 진위 여부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 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라면 이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바. 제4징계사유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5. 1.부터 2015. 3. 31까지 진료시간에 늦은 횟수가 00회라고 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청구인은 강의 이외에 외부 회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두고 지각으로 오인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산출근거는 부정확하다. 또한 무단결근을 3회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컨디션 난조 등의 이유로 출근이 어려워 같은 보존과 교수에게 미리 연락을 하여 대신 진료를 부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사. 제5징계사유에 관하여

청구인은 ○○○ 원장과 ○○○ 교수의 지인들에 대한 치료 후 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단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료행위에 대한 수납여부만 확인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 기타사유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2009년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종료되었던 사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징계처분의 주문 이유서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는 무관한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내용이 열거되어 있어, 이러한 일련의 징계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징계양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료진료 행위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 술자리 강요·언어적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와 배치되는 진술을 한

교수, 전공의, 위생사들이 다수 있다는 점, 지각 및 무단결근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점, 징계혐의사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배제된 채 충분한 소명기회를 받지 못한 점, 징계절차가 병원장에 의해 청구인을 축출하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 청구인은 탁월한 연구실적 등으로 선후배들의 귀감이 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징계인 해임의 처분은 과중하며 정직 1개월 또는 견책이나 불문경고 정도가 적당하다.

3. 판단

가.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1)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청구인이 징계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받지 못하였고,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조사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징계의결요구(2015. 9. 1.) 전인 2015. 4. 22. 피청구인의 감사팀 조사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징계사유인 청구인의 부정 진료와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통보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이 부분 징계절차의 하자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1)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 가) 청구인이 1년에 한 두 명 정도 병원 직원(또는 그들의 가족)이나, 청구인의 지인, 가족을 치료해주면서 초진료 또는 재진료비와 인건비 성격의 진료비를 받지 않고 치료를 해 준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무료 진료행위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적이 없고, 다른 많은 교수들도 무료진료를 하고 있으며 병원 측에서 무료진료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한 후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 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제1항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친인척, 지인들에게 6차례 정도 무료 진료를 하였으며 진료기록을 누락한 점, 환자의 아버지 ○○○은 2014년 5월경 치료 대금으로 청구인에게 50만 원을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대학교병원에는 본인 및 가족 치료 시에 감면제도가 존재하며 이를 위한 할인코드²⁾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여성 전공의 및 치위생사에게 술자리강요, 귀가 시 동승 강요, 술자리에서 욕설, 언어적 성희롱, 신체접촉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 문답서, 진술서 등에 의하면, ○○○, ○○○ 등이 날짜,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에 따라 청구인의 언어폭력(욕설 등), 성희롱, 부당지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국가연구과제 집행과정에서 매출 전표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 바(bar) 라는 곳에서 연구비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유흥주점(○○○)에서 연구비 사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라는 식당 영수증을 발급 받은 것이 아니며, 허위 회의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초과 진료 시, 직원 본인의 경우 ‘코드 A4’, 직원 가족의 경우 ‘코드 A5’, 직원 형제의 경우 ‘코드 A6’

다) 살피건대, 「○○대학교 외부 연구비 관리지침」제21조(연구비 집행 기준 일반사항)에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연구수행을 위해 철저하게 사전계획 하에 집행하여야 하며 시간 및 장소의 적정성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 문답서 등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은 한식집이 아닌 것은 알고 있다. 술집은 연구비 규정에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로 간 것이다. 연구비를 처리할 때는 10시 이전에 결제하여야 하고 술값은 안 되는 것이다. ○○○은 한식집이라고 나오고 ○○○는 바(BAR)라서 정산이 안 돼서 그렇게 한 것이다.” 등의 진술을 한 점, ② 청구인이 “회의록에 참석자라고 적어서 낸 사람은 실제로 참석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답변한 점, ③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비위 행위가 사실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4) 제4징계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전에 동료 교수에게 미리 연락을 하여 대신 진료를 부탁 하였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4. 16, 2014. 6. 28, 2014. 9. 25. 3차례에 걸쳐 복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5회 이상을 청구인의 지각 등으로 다른 교수나 전공의가 청구인 대신 진료한 점 등이 확인되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5) 제5징계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 원장과 ○○○ 교수의 의료기록을 열람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은 이에 대해 다른 교수들이 지인들을 치료한 후 수납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타 교수 의료기록 열람행위는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6) 기타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2009년 해외연수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와 무관한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 내용이 열거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태불량 자료와 징계의결사유서에는 2009년 해외연수 내용 등은 적시되어 있지 않은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청구인이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임상교수로서 ① 진료기록을 누락하는 등 부정 진료를 하였고, ②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의 진료 기록을 무단 열람하였으며, ③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점 등은 성실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인바,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피청구인의 원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절도
1건

사건 1

2016-○○○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감경) 청구

처분 요지 학교 행사를 위해 공용으로 구입한 물품을 반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함

결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제61조 (청렴의무)

청 구 인 : ○○○

소속 ○○고등학교 직위 교사

피청구인 : ○○○교육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청구인은 2013. 7월 하순경 ‘○○고 자기발전다짐’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750ml 생수 120통 6만 원 상당을 구매하였으나, 우천으로 인해 그 행사가 취소되었고, 해당 생수를 ○○고 지리산 등반 및 리프팅 행사(2013. 8. 9.)에서 사용하기 위해 기숙사 사감실에 보관 중, 2013. 7. 하순경 생수를 임의로 가지고 가서 자신이 총무로 활동하는 축구동호회 회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적용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의결한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증거 자료에 대한 설명 기회를 생략하고, 최종 진술도 간단히 가급적 빨리 발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청구인의 억울함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청구인은 2013. 7. 13. 40통의 생수를 가져간바 있으나, 이 생수는 2013. 7. 12. 구입된 것이 아니라 2013. 5월~6월경 학교 행사를 위해 구입한 뒤 남은 것이었고, 청구인이 법정에서 해당 생수가 2013. 7. 12. 구입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착각에 의한 것이었다.

기숙사부장 ○○○는 법정에서 청구인이 2013. 7. 12. 구입된 생수를 가져가는 바람에, 8월 행사 둘째 날 물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정수기의 물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행사 때의 사진을 보면 둘째 날도 학생들이 새로운 생수를 지급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가져간 생수가 5, 6월에 구입된 것이므로 2013. 7. 12. 구입된 생수는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8월 행사에서 모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 진술은 거짓이다.

청구인이 생수를 가져간 것은 해당 생수가 장기간 방치되어 폐기할 목적으로 가져간 것이며, 생수를 가져가기 전에는 ○○○ 사감의 동의를 구하였다.

3.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유무(有無)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회의록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방어권 제한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바,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1) 청구인이 2013. 7. 13.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실에 보관 중이던 500ml 용량의 생수 40통을 반출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 없이 인정된다.

- 2) 청구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생수를 반출하기는 하였으나 생수를 가져가기 전에 사감 ○○○의 동의를 구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 이 사건 ○○지방법원 판결문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이 학교의 기숙사 관리교사 및 사감들에 의한 공동점유에 속하는 생수를 다른 점유권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고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점, ㉡ 청구인이 생수를 가져가면서 사감 ○○○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또한, 청구인은 생수가 변질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가져간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법원은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생수를 자신이 속한 조기축구회에서 사용하려 하였다’는 청구인 스스로의 진술과도 모순되고, 청구인이 생수를 학교행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더라도 사전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4)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자신이 가져간 생수가 징계대상 사실과 달리 2013. 7. 12. 구입된 것이 아니라 2013. 5월~6월경 구입되었던 것으로 2013. 7. 12. 구입된 생수는 8월 행사에서 모두 사용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생수를 가져가는 바람에 8월 행사에서 물이 부족하여 둘째 날 정수기 물을 먹었다는 ○○○의 진술 역시 거짓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사과정은 물론 1심과 2심 재판에서까지 자신이 가져간 생수의 구입 시기를 2013. 7. 12. 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없어진 생수가 5, 6월에 구입된 것이라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 청구인은 2013. 7. 12. 구입된 생수가 없어지지 않고 8월 행사에 모두 사용되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8월 행사 둘째 날 학생들이 새로운 생수를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증거(사진)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사진에는 구입 후 개봉되지 않은 다량의 생수가 찍혀 있기는 하나 해당 생수는 2013. 7. 12. 구입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³⁾ 그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가져간 생수를 5, 6월에 구입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즉,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사진에 다량의 생수가 찍혀있음에도 ‘○○○’ 생수는 보이지 않는바, 2013. 7. 12. 구입된 생수가 8월 행사에서 모두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③ 청구인의 주장처럼 행사 둘째 날 새로운 생수가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학생들이 정수기 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그렇다면, 청구인이 징계대상 사실과 같은 절도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1) 징계권자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 2)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이 징계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에 해당하는 점, 징계의 감경은 징계권자의 재량사항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전, 물품 등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

3)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3. 7. 12. 구입된 생수의 상표는 ‘삼다수’이나, 해당 사진에 나타난 생수의 상표는 ‘삼다수’가 아닌 것으로 보임.

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절취한 생수의 가격을 법원의 판결을 참조하여 시가 17,200원으로 산정한 후 이에 대하여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적정하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 처분도 과중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기
2건

사건 1

2014-○○○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요지 정부 재정지원 사업 및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청구서, 회의록 등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비를 편취함

결정 요지 사업비를 불법적이고 반복적으로 교부받은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지 않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청 구 인 : ○○○

소속 ○○대학교 직위 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학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가. ‘2단계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관련 편취

청구인은 ‘2단계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2차년도)’을 수행하면서 2011. 1. 7.경부터 2011. 2. 25.까지 32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약 1,11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흡습제 기술혁신 개발사업’ 관련 편취

청구인은 ‘흡습제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2009. 2. 10.경부터 2010. 2. 12.까지 10회에 걸쳐 약 51만 원을 불법적으로 교부받았다(총 1,163만 원: 1,112만 원 + 51만 원).

다. (징계양정 참고) 아울러, 일련의 비위행위에 있어 비위기간 내에 행한 모든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징계시효를 도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2005. 5. 26.부터 2008. 5. 16.까지의 비위행위를 보면, 청구인이 이 기간 동안 515회에 걸쳐 약 3억5,681만 원을 불법적으로 교부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3. 8. 30. 피청구인 징계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할 수가 없어 1심 법원 판결을 보고 징계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8. 27.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체 위탁교육 신입생 확보방안 및 대책 등 수차례에 걸쳐 각종 회의와 강의를 하였는데, 참석률이 저조하여 회의에 불참한 연구원들 중 일부를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작성하고 연구원들 중 일부로부터 회의비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데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체 인사들에게 회의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산업체의 동 사업에의 참여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취업 및 현장실습 의뢰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관례에 따라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하면서 법적 문제는 발생하였으나, 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에 이바지하였고, 산학협력지수를 높였으며, 학생 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대기업 24명, 중소기업에 기계설계전공 98%를 취업시킨 바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례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운영비로 사용한 점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나, 보고서대로 진행을 잘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현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기본적인 도덕심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3. 판단

가. 재판 종결 이전 징계절차 진행의 적절성 여부

피청구인이 2013. 8.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어 1심 법원 판결을 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2014. 8. 27. 징계위원회를 강행하여 해임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2단계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관련(편취) 부분

판결문의 기재에 따르면 <표1>의 기재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대학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11,122,8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표 1]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2차년도 육성사업 편취 행위

연번	문서제출일 (송금받은일)	금액(원)	주요내용
1		1,912,000	기업체 애로사항 기술지도를 한 것 처럼 기술지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기술지도비를 교부받음
2	2011. 1. 7	1,912,000	
3	(2011. 1. 26)	1,338,400	
4		573,600	
5		80,000	2011. 1. 19.경부터 1. 21.경까지 ○○대학에서 인턴십을 통한 산업기계취업 클러스터 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회의비를 교부받음
6	2011. 1. 21	10,000	
7	(2011. 1. 26)	80,000	
8		100,000	
9		100,000	
10	2011. 1. 21 (2011. 1. 26)	200,000	2011. 1. 17.경 전문가 활용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교부받음
11	2011. 1. 17	200,000	캡스톤 디자인 관련 지도를 한 것처럼 기술지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기술지도비를 교부받음
12	(2011. 1. 27)	100,000	
13	2011. 1. 21	100,000	산업체 인턴십 평가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평가수당을 교부받음
14	(2011. 1. 27)	100,000	
15		100,000	
16	2011. 1. 21 (2011. 1. 27)	100,000	2011. 1. 20.경 공학관에서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 평가를 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

연번	문서제출일 (송금받은일)	금액(원)	주요내용
17		100,000	고 산학협력단에 이를 청구하여 현장실습 평가비를 교부받음
18		100,000	
19		841,280	고강력 압축인젝터 펌프개발을 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출장비 및 인건비를 교부받음
20		40,000	
21	2011. 1. 21	40,000	
22	(2011. 1. 28)	1,376,000	
23		879,520	
24		40,000	
25		100,000	2011. 2. 11.경 산업계 인력양성 CAE과정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회의비를 교부받음
26	2011. 2. 22	100,000	
27	(2011. 2. 25)	100,000	
28	2011. 2. 22	200,000	2011. 2. 14.경 캡스톤 디자인 전시회 평가를 한 것처럼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전시회 평가비를 교부받음
29	(2011. 2. 25)	200,000	
	합계	11,122,800	

2) 흡습제 기술혁신 개발사업 관련(편취) 부분

판결문의 기재에 따르면 <표2>의 기재 내용과 같이 2009. 2. 10.부터 2010. 2. 12.까지 10회에 걸쳐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 대학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약 51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표 2] 흡습제 기술혁신 개발사업 편취 행위

연번	문서제출일 (송금받은일)	금액(원)	주요내용
1	2009. 2. 10	48,000	출장을 간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출장비를 교부받음
2	(2009. 2. 17)	75,000	
3		40,000	2009. 2. 9.경 기술개발 및 흡수제 매카니즘 규명 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회의비를 교부받음
4	2009. 2. 10	40,000	
5	(2009. 2. 17)	40,000	
6	2009. 8. 27	48,000	출장을 간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출장비를 교부받음
7	(2009. 9. 4)		
8	2009. 8. 27	125,000	연구활동을 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연구비를 교부받음
9	2009. 11. 23	48,000	출장을 간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출장비를 교부받음
10	(2009. 11. 24)		
	2010. 2. 9	48,000	출장을 간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출장비를 교부받음
	(2010. 2. 12)		
	합계	512,000	

3) 따라서, 청구인이 '2단계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2차년도)' 및 '흡습제 기술혁신 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편취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동종의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점, 비록 징계시효 도과로 청구인이 2005. 5. 26.부터 2008. 5. 16.까지의 기간 동안 515회에 걸쳐 약 3억 5,681만 원을 불법적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는 점(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산학협력단 예산을 불법적이고 반복적으로 교부받은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과중하지 않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2

2016-○○○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요지 주식투자를 명목으로 동료 교사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결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제61조 (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청 구 인 : ○○○

소속 ○○고등학교 직위 교사

피청구인 : ○○○교육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가. 청구인은 교사임용 발령 동기인 ○○○에게 2011. 9월경 “○○은행에 다니는 남편 명의로 자사주를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기회를 줄테니 투자하라.”는 말로 기망하여 2011. 9.14.부터 2014. 1. 3.까지 총 11회에 걸쳐 금 2억 599만 원을 ○○○으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또 다른 발령 동기인 교사 ○○○에게 “○○○의 돈을 대신 투자해 주고 있는데 수익률이 30%이다. 돈을 송금하면 대신 주식 투자를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2012. 5. 4.부터 2014. 2. 18.까지 ○○○으로부터 금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총 14회에 걸쳐 약 3억 2,600만 원의 자금을 피해 교사 ○○○과 ○○○으로부터 송금 받아 한 차례도 투자금을 정산하지 않은 것은 투자금 손실을 고의적으로 피해 교사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거나 재물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청구

인은 투자금 손실로 피해 교사들과 분쟁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두 명의 교사(○○○, ○○○)로부터 투자된 금액은 최초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나,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해 교사들이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청구인은 법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징계사유에 대해 무죄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고소인들(○○○, ○○○)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기소내용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징계처분은 공정하지 못하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1) 청구인이 ① 피해 교사 ○○○과 ○○○에게서 2011. 9월부터 2014. 2월까지 약 3억 2,600만 원을 주식 투자 명목으로 송금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 2)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며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검찰청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 및 피청구인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11. 9월경 개인적인 대출금으로 5억 3,600만 원의 은행권 채무가 있었고, 주식투자를 통해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었다는 점, ② 2011. 9월경 청구인이 피해 교사 ○○○에게 말한 자사주는 검찰에서 확인한 결과, 그 당시에는 ○○은행에서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판매하지도 않았던 점, ③ 2014. 3. 4. 피해 교사들이 청구인으로부터 “법으로 해 봐야 소용없을 것이다. 남편이, 목포에 내려가서 잠시 피신하고 있으면 경찰이 어차피 무혐의 처리한다고 말했다”라고 들은 점, ④ 청구인은 피해 교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청으로부터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점, ⑤ 청구인은 피해 교사들이 중간에 투자금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지 않아서 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⑥ 청구인은 피청구인 감사관 문답서에서 사기죄로 통보된 사안으로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해 교사들의 재물을 편취한 것은 사실로 보이며, 이로 인한 당사자 간 분쟁으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재량권 행사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징계위원회 처분 시 청구인의 사건은 ○○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상태이기는 하나,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85누407 1986. 6. 10. 판결 참조),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권자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청구인이 동료 교사들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 1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피청구인의 원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탁
2건

사건 1

201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요지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교구 구매를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토록 부정 청탁

결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무),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6조(특혜의 배제)

청 구 인 : ○○○

소속 ○○중학교 직위 교장

피청구인 : ○○교육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청구인은 2014. 4. 17.부터 2014. 8. 28.까지 ○○중학교 보건실 및 특수 학급 비품(약품보관장 외 5종) 등 5건(계약금액 39,195,400원)의 계약을 동생 ○○○가 알선한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6조(특혜의 배제)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청구인은 ○○중학교가 2014. 3. 1. 신설될 당시 교육환경이 우수한 학

교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 학교 개설에 관한 조언을 구하던 중, 가구와 실내 인테리어에 관련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어릴 적부터 미적 감각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았던 동생을 학교로 불러 논의를 하였던 것이고, 당시 동생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공사와 관련된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시 다양한 업체들이 학교에 들어와 공사를 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진행은 행정실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업체 선정에 관여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은 이 사건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알게 되었다.

나. 징계양정 부당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동생이 업체 선정에 관여된 사실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잘못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 행위가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노력을 하는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부주의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하여「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징계의 감경) 제3항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징계사유는 청구인이 2014. 4. 17.부터 2014. 8. 28.까지 ○○중학교 보건실 및 특수학급 비품(약품보관장 외 5종) 등 5건(계약금액 39,195,400원)의 계약을 동생이 알선한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문답서 기재에 따르면 행정실장은 “교장님 동생 소개로 ‘○○○업체’에서 도서관 인테리어공사 등 5건(39,195,400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교장 동생분이 다른 사람들(‘○○○업체’ 직원 1, 2명)과 같이 와서 공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업체’ 대표 ○○○은 “영업을 하는 ○○○ 씨를 통해 ○○중학교와 계약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동생이 이 사건 계약에 관련된 업체를 알선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양 당사자 간 다툼도 없다.

- 2) 다만 청구인은 동생에게 학교 공사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정도로 도움을 청한 것이어서 동생이 학교 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으며, 동생의 업체 알선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실확인서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이 동생 ○○○가 학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모를 수 있었는지’를 묻는 감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교감과 행정실장은 ‘일반교사도 ○○○를 알아볼 정도로 학교일을 많이 했는데 교장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문답서 기재에 따르면 행정실장은 ‘○○○가 학교 비품 납품 및 공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묻는 감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실장은 “디자인 스케치 등 밑그림은 교장 선생님과 ○○○가 협의를 해서 도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제가 ○○○와 계약을 진행하였음”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교장에게 수의계약 등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학교회계를 총괄하고 계약의 주체가 되는 지위에서 ○○○의 알선을 통하여 특정 업체(‘○○○업체’)가 수의계약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중학교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동생의 알선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1) 징계권자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 2)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① 이 사건 처분이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 처분인 점, ②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3항에 따른 징계의 감경은 징계권자의 재량사항인 점, ③ 기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2

201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 처분 요지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교구 구매를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토록 부정 청탁
- 결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음
-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청 구 인 : ○○○

소속 ○○중학교 직위 교감

피청구인 : ○○○교육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혐의자는 2015. 5월~6월경 ○○○교육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으로부터 전화로 ‘가구하는 사람이 찾아갈 것이니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견적을 받아볼 것을 요청’ 받았다. 이에 혐의자는 6월경 같은 학교 행정실장에게 ‘비서실에 근무하는 ○○○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교육감 후배가 운영하는 ○○○교구에서 물건을 사줄 것’을 부탁하였고, 행정실장은 마침 특별교실 교구 구입 건이 있어 ○○○교구 ○○○를 학교로 불러 교장, 교감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납품할 수 있는 교구에 대해 물어 보았으나 위 업체에서는 교구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신 학생 탈의실 설치공사를 발주할 것을 약속하였다. 전문공사업 자격이 없는 ○○○교구에서는 전문공사업 자격이 있는 ○○○사 사장을 대동하여 탈의실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한 후

견적서와 도면 등을 행정실장에게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본 공사를 ○○○사에서 진행하면서 ○○○교구와 계약한 발판 납품도 ○○○사에서 이행하였다. 위 혐의자의 행위는 특정 업체에 대한 알선·청탁으로 판단되기에 충분하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교육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와 평소 신설학교 개교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협의 통화를 종종 하였다. 청구인의 학교는 2015. 3. 1. 개교하여 학생교육활동 및 과밀학급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여 혼란한 상황이었고, 2015. 5월 ~ 6월경 ○○○와 통화 당시에 ○○○의 단순한 업체 정보 안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6월경 행정실장과 답소하는 과정에서 ○○○가 이런 업체도 있다고 하니 필요하면 제안을 받아보라는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

나. 편의 제공 사실 없음

청구인은 ○○○교구 ○○○로부터 유선으로 만나자는 연락이 있었으나 용무가 있으면 학교로 내교 할 것을 요청하여 교장, 행정실장과 함께 만났으며, 업무 진행과정에서 해당 업체 선정과 관련된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다. 행정실장이 언급한 탈의실 설치공사가 ○○○교구가 아니라, ○○○사와 계약된 사실은 감사결과를 보고서야 알았다.

다. 징계 양정의 과중

청구인은 행정실장과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 업무 참고사항으로 언급하였을 뿐 청탁할 의사가 없었으며, 교육부총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신규 교감으로 경험 부족 및 개교 초기의 혼란한 상황에서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려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피청구인의 징계 처분은 과중하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1) 「공무원 행동강령」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항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제11조의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을 증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교섭이 성립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 2) 청구인은 행정실장과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교구를 안내하였을 뿐, 해당 업체와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과의 통화도 일상적인 통화 과정에서 ‘일전에 이야기한 업체가 공사를 맡았다’고 결과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행정실장에게 ○○○교구에서 물건을 사줄 것을 부탁하여, 행정실장은 ○○○교구 ○○○를 불러 교장, 청구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교구에 대해 물어 보았으나 ○○○은 교구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자 학생 탈의실 설치공사를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문공사업 자격이 없는 ○○○교구가 ○○○사 사장을 대동하여 탈의실 설치 공사에 대하여 설명함에 따라 ○○○사와 탈의실 설치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점, 탈의실 설치에 따른 탈의실 발판 제작 계약은 ○○○교구와 이루어졌음에도 ○○○사에서 이를 납품한 점, 탈의실 설치 공사 계약 이후 청구인은 행정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교구를 안내하였던 ○○○에게 전화하여 ‘일전에 부탁한 ○○○교구에 한 건 맡겼다’고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의 부탁에 따라 ○○○교구를 행정실장 및 교장에게 소개하여 사업 선정상의 특혜를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제11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 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르면, 그 밖의 성실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청구인이 교감의 지위에서 행정실장에게 ○○○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에

근무하는 ○○○이 소개한 ○○○교구 업체를 얘기하고, 이후 행정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에게 ‘일전에 이야기한 업체가 공사를 맡았다’는 식으로 결과를 얘기한 사실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알선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대한 견책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또한 과중하지 않아,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금품수수

10건

사건 1

2015-○○○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요지	교사들에게 명절선물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여 금품수수
결정 요지	처분 사유는 사실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원 처분은 과중하지 않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무)

청 구 인 : ○○○

소속 ○○초등학교 직위 교감

피청구인 : ○○교육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청구인은 ‘명절에 웃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다’, ‘5학년 신규교사들이 잘 모른다’, ‘관리자들에게 선물도 하는 것이 예의다’, ‘인사담당 장학사가 내 친구다. 이러니 선물을 해야 한다.’, ‘전출 간 ○○○과 △△△교사는 나에게 선물을 안 하였다. 싸가지 없게 대한다. 뒷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 ‘성과급 B를 받은 사람이 선물을 주면 A를 줄 수도 있고 A를 받은 사람이 선물을 주면 S를 받을 수도 있으니 10만 원을 아까워 마라.’ 등의 발언으로 교사들에게 명절선물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여 2013. 9. 1.부터 2015. 2. 까지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44건, 1,436,140원)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 주장

-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물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교사 5명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학교 내에서 그 어떠한 형태로도 선물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선물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는 진술 증거만이 유일한데, 업무분장이 뜻대로 되지 않고 교원성과상여금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나오자 민원을 제기한 해당 교사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나. 청구인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대가 관계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명절선물을 받은 것이다. 청구인이 처음 교감으로 부임하면서 잘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교사들로부터 명절선물을 받고 이를 곧바로 돌려주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중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판단

가.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1990. 9. 1.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초등학교로 2013. 3. 1. 전보되어 근무하다 2013. 9. 1.부터 교감으로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다.
- 2) ○○교육청은 2015. 4. 21. 익명의 민원인으로부터 △△초등학교 금품(선물) 요구 및 수수 등의 사안을 제보 받아 2015. 5. 6.부터 6. 26.까지(기간 중 13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3) 피청구인은 2015. 7. 14.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대상금액 : 1,436,140원)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다.
- 4)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8. 6. 청구인에 대하여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3배(4,308,420원) 부과 의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8. 12. 청구인에게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3배(4,308,42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청구인은 교사들로부터 받은 선물은 직무상 관련이 없는 단순한 명절선물이며, 학교 내에서 선물을 요구한 적이 없고 민원을 제기한 교사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 24명 중 16명이 청구인이 선물을 요구한다는 발언을 직접 들었거나 전달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여러 명의 교사들이 자신들의 선물 제공 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물품구입 영수증과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금품수수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 청구인이 교감으로 승진한 2013. 9. 1.부터 2015. 2.까지 총 44건(1,436,140원)의 명절선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위와 같이 청구인은 직·간접적으로 교사들에게 금품(명절선물)을 요구하고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였고, 청구인의 비위행위는 교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한 것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교사들에게 명절선물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2

2017-○○○ 파면 등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요지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및 청렴의무 위반

결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음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무)

청 구 인 : ○○○

소속 ○○대학교 직위 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학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가. ○○○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4. 8월경부터 2016. 4월경까지 (주)○○○사 ○○○로부터 ‘○○○사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을 계속 처방하여 납품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23,450,000원을 21회에 걸쳐 수수하여,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나. ○○○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4. 10월경부터 2016. 6월경까지 (주)○○○사 ○○○로부터 ‘○○○사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을 계속 처방하여 납품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14,820,000원을 21회에 걸쳐 수수하여,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다. ○○○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 1월경부터 2016. 4월경까지 (주)○○○사 ○○○로부터 ‘○○○사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을 계속 처방하여 납품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4,970,000원을 16회에 걸쳐 수수하여,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라. 위와 같은 각 청구인들의 행위는 배임수재 및「의료법」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학교법인 ○○ 정관」 제53조의2 제1항 제3호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절차적 하자

- 1) 징계위원은 「사립학교법」 제3항 제2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외부 징계위원인 ○○대학교 ○○○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회에 다니면서 교단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바, 이는 외부위원을 두도록 한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므로 본 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
- 2) 또한 피청구인은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사립학교법」 제64조에 따른 징계의 협의 뿐만 아니라 그 경위, 기타 정상관계 등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인들을 위해 진술해주기로 한 ○○○병원 ○○○교수의 관계인 진술 청취도 생략하여 징계 의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신의칙 위반 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

나. 과중한 징계처분

- 1) 청구인들은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청구인 ○○○의 경우 환우회 합창단 지원, 건강강좌책 제작, 환우회 산행 행사 등에, 청구인 ○○○의 경우 학회 활동비, 과회식비, 개인 연구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청구인 ○○○의 경우 체불 임금이 50,000,000원이 넘게 남았는데도 병원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부담 많은 보직에 최선을 다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학교와 병원의 발전에 공헌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
- 2) 「사립학교법」의 당연퇴직 사유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은 벌금형의 경우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한정하므로, 「형법」 제357조가 적용되는 배임수재 혐의의 청구인들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 2와 상관없다. 따라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청구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청구인 ○○○의 경우 검찰에서조차 벌금형을 구형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바, 「사립학교법」의 당연퇴직 사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과중하다.

3.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여부

- 1)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사립학교법」 제62조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법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임명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동 조 제3항 제2호(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피청구인이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선임한 자는 ○○대학교 ○○○교수로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 교원으로서 위 규정 제62조 제3항 제2호의 라목에 해당하는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보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징계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위원의 기피 등) 제1항은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위 외부위원이 피청구인 법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었다면 기피 신청을 통해 이를 다투었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징계 절차 진행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선임한 피청구인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한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징계 혐의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는 참고인 의견 청취를 생략하여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이 징계의결에 반영되지 못하게 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 5) 「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충분한 조사’란 징계제청 및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서 징계혐의 사실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를 의미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제청권자나 징계요구권자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행하면 충분하다(서울행법 2015. 4. 10. 선고 2014 구합67581 판결 참조).

6) 제출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2016. 11. 15. 교원징계위원회에 청구인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 전 이미 청구인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피청구인은 2016. 10. 18.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 받았다. 따라서 전문 수사기관을 통해 이미 청구인들에 대한 징계 혐의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조사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청구인들에게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그 외에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사립학교법」제64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동법 제65조 제2항은 교원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징계대상자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할지 여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바, 징계위원회에서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1)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주)○○○사 ○○○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수수하여 배임수재 및 의료법을 위반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 2) ○○○병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청구인 ○○○이 2014. 9월경 ○○○병원 내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위 ○○○로부터 ‘○○○사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을 계속 처방하여 납품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4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월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23,450,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청구인 ○○○이 2014. 10월경 ○○○병원 내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위 ○○○로부터 ‘○○○사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을 계속 처방하여 납품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1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월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14,820,000원을 수수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 ○○○이 2015. 2월경 ○○○병원 내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위 ○○○로부터 ‘○○○사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을 계속 처방하여 납품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월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4,970,000원을 수수한 사실들을 인정하여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청구인 ○○○에게 벌금 10,000,000원과 추징금 23,450,000원을, ○○○에게 벌금 8,000,000원과 추징금 14,820,000원을, ○○○에게 벌금 4,000,000원과 추징금 4,970,000원을 각 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도 위와 같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확인되는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들은 모두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 1)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 2)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행위가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연 퇴직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자동 퇴직 되는 것으로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징계와는 별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배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청구인들은 ① 의사이자 교원으로서 사회에 모범이 될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점, ② 청구인들의 행위는 국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있어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④「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청렴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⑤ 동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의 경우에는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피청구인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각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3

201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요지	수상을 매개로 금품제공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수수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함
결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청 구 인 : ○○○

소속 ○○교육청 직위 장학사

피청구인 : ○○교육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장학사 ○○○은 2015. 9. 1.부터 2016. 6. 7. 사안조사일 현재까지 ○○
○○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2015년 12월 ○○교육지원청 ○○센터 전문상담사 ○○○은 교육부와 한
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5회 ○○ 희망대상(大賞) 우수사례 공모’
에서 대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1월 한국교육개
발원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 운영 관계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 연
수’에 도교육청 ○○○장학사와 함께 참가하게 되었는데, 연수기간 중 ○○
○○장학사는 타 시도참석자에게 전문상담사 ○○○을 소개하면서, “○○의 대
상 수상자다. 그런데 대상을 수상했는데 인사하러 오지 않았다.”는 등의 사례
를 의미하는 부적절한 발언(2회)을 하였다.

○○○교육지원청 ○○센터 전문상담사 ○○○은 위와 같이 연수기간 중 ○○○장학사의 “인사하러 오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듣고, ○○○장학사가 ○○센터를 담당하는 장학사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인사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2016. 2. 2. 17:30경 ○○○마트에서 양주 1병과 음료수 2박스(총 86,960원)를 상품권으로 구입한 후, 같은 날 18:10경 본청 지하 1층 농협 주차장 앞에서 ○○○장학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授受)하였다. 장학사 ○○○은 양주 1병(73,000원)은 본인의 집으로 가져가고, 음료수 2박스(13,960원)는 사무실에 가져가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장학사 ○○○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와 제78조의2(징계부가금)의 규정에 해당된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1992년 9월 ○○ ○○○초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한 후,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 등으로부터 16차례 표창을 수여 받은 사실이 있다.
- 나. ○○○ 상담사에게 한 인사 발언은, 결코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청구인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연수가 끝나기 전에 ○○○상담사에게 “인사 관련 이야기는 농담이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였다.
- 다. ○○○상담사가 건네는 선물을 3만원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받았다가 2016. 6. 9.경 돌려주었다.
- 라. 이 사건으로 인해 청구인은 4대 비위 중 하나인 금품 수수 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향후 승진까지 제약받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처분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센터 전문상담사 ○○○의 진술내용 자료를 보면, ① 청구인이 ○○센터 전문상담사 ○○○에게 ‘○○ 희망

대상(大賞)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니 인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2회 한 사실 및 ② 청구인이 2016. 2. 2. 위 ○○○로부터 조니워커 골드리저브 양주 1병(73,000원)과 아로골드D 음료수 2박스(13,960원)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 2)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1) 징계권자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 2) ①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 등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 ③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먼저 ○○센터 전문상담사 ○○○에게 “대상을 받았는데 왜 인사를 하지 않는냐”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후, 양주 1병 등을 수수하였는바,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견책 처분은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4

2016-○○○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감경) 청구

- 처분 요지** 명절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함
- 결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 처분도 모두 적정함
-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78조의2(징계부가금),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청 구 인 : ○○○

소속 ○○중학교 직위 교사

피청구인 : ○○○교육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청구인은 2013. 3. 1.부터 현재까지 ○○중학교 운동부 담당 예체능교육부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2013. 9. 13. 추석명절을 앞두고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1학년 축구부 학부모 ○○○에게 명절 선물 명목으로 선물세트 4개를 준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학부모 ○○○은 2013. 9. 14. 시가 150만원 상당의 갈비선물세트 5개(개당 30만원)를 코치 ○○○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2013. 9. 14. 코치 ○○○에게 갈비선물세트 5개 중 본인에게 1개를 가져오고 나머지 4개는 감독 ○○○, 코치 ○○○, ○○○ 식당근무자가 나눠 가지라고 지시하였다.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징계부가금 부과결정 요구 대상에 해당되어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에 처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의 배경

○○중학교의 축구 코치진은 학부모가 코치진에게 14년간 관행적으로 행한 고액의 선물과 금품 선물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학교장 경고조치 2회를 받아 코치 공개채용에서 탈락될 위기에 놓이자, 학교장과 청구인을 협박·회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혐의사실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혐의사실의 부정

1) 청구인은 2013. 9.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축구코치 ○○○, ○○○이 자신들이 준비한 명절선물이라며 갈비세트 1개를 주어 이를 받았으나, 명절이 지난 직후 참치선물세트를 구입해 코치진에게 답례를 하였고 청구인의 사비로 코치진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이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학부모나 코치진이 2013년 당시에 혐의사실을 신고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2년이 지나 ○○중학교 축구코치진 공개채용 심사 당일인 2015. 10. 29.에 맞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일보에 제보한 것은 축구코치 선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의 혐의 사실을 조사하면서 조사관련 사전예고를 해태하였고, 시종일관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자술서의 모든 내용을 부인하며, 조사관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자술서는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과중

청구인은 ○○ 교육발전을 위해 35년간 ‘청빈’을 신조로 학생지도에 전념하였다는 점, 2009년부터 3년간 교육분야 공무원의 100만원 미만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은 92건 중 주의경고가 44건, 견책 33건, 감봉 8건, 정직 5건, 해임 2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은 너무 과중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는 청구인이 2013. 9. 13. 학부모에게 명절선물(갈비 세트) 4개를 요구하여, 축구코치 ○○○, ○○○를 통해 선물세트 5개를 전달받아 그 중 1개는 본인이 갖고 나머지 4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함으로써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청구인도 축구 코치로부터 갈비세트 1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자신이 학부모에게 명절 선물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갈비세트는 축구 코치가 마련하여 준 것으로 생각하여 명절이 지난 뒤 참치선물세트로 답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피청구인이 제출한 ○○○ 교육청 감사자료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학부모에게 명절 선물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1학년 대표 학부모이자 운영위원인 ○○○이 저에게 코치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명절도 다가오니 선물을 하는 게 어땠겠느냐고 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과일 정도 하면 어땠겠느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진 맥락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통념상 청구인이 학부모에게 선물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청구인이 학부모에게 선물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이 있는 이상, 추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실은 비위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술서는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증거능

력이 없으며 해당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부정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술서가 아니라, 피청구인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1) 징계권자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 판례는 금품의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징계양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 2) ①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렴의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증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해임-강등-정직’의 징계 양정이 예정되어 있는 바, 체육 특기생들의 진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육부장 보직에 있는 청구인의 지위와 그 수수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비위는 그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교직사회에서의 금품 수수 비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해당 비위를 엄단할 공익상의 필요가 상당한 점, ④「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금품수수 비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의 적정 여부

-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별표 1의3] <개정 2011. 11. 1.>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 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 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 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1배
2. 공금 횡령·유용				

2) 위 규정에 의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이 예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비위 및 과실의 정도, 기타 제반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부가금 3배 부가처분은 적정하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 처분도 모두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5

2016-○○○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요지 학교 기숙사 신축을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증거를 위조함

결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음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무)

청 구 인 : ○○○

소속 ○○대학교 직위 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학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가. 징계대상자는 엄격한 도덕적 책임과 관리책임이 요구되는 ○○○대학교 ○○처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성실히 대학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및 관할청 승인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 없이 계약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업자로부터 2천만 원의 부당 금품을 수수함은 물론 상식과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10년 무상임대 등의 계약을 통해 대학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자 금품수수에 대한 증거 조작에 가담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재 배임 수재, 업무상배임, 증거위조교사의 혐의로 구속 기소 중이다.

나. 징계대상자의 이러한 행위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

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심각히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며,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비추어 볼 때도 그 비위의 정도나 고의성이 심하여 감경의 여지가 없어 파면 처분한다.

2. 청구인 주장

- 가. ○○○대학교 기숙사 BTO사업은 전 총장직무대행이었던 ○○○의 강한 소신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청구인은 ○○○의 지시를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한 것뿐이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업자(○○○사 이사 ○○○)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여 지분투자대가로 받은 것이지, 위 BTO사업에 대한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 나. ○○○대학교 학생식당 무상임대계약을 (주)○○○과 체결한 것도 학교행정 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그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 또 (주)○○○이 학교 식당에 시설투자를 조건으로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학교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금품수수에 대한 증거조작(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가담하였다는 부분은, 청구인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것이 경찰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뿐, ○○○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 또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
- 라.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해 파면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것이고, 청구인은 현재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된 후에 소청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주기를 원한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처분 사유 요지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요지는, ① 이사회 및 관할청 승인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 없이 계약 체결을 추진하

고, 그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② ○○○대학 학생식당에 대해 10년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대학에 손해를 끼쳤고, ③ 수사가 진행되자 금품수수에 대한 증거조작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이하에서 위 징계사유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2) 기숙사 BTO사업 계약 체결 추진 및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

가) 이 사건 증거자료 중, ㉠ ‘○○○대학교 기숙사 및 학생식당 신축사업 양해각서’ 및 ‘수익형 민자사업(BTO) 계약서(기숙사 & 부대시설)’를 보면, 2012. 4. 27.경 ○○○대학교와 ㉡○○○ 사이에 BTO 민간투자사업 방식⁴⁾으로 기숙사 건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 수 있고(청구인은 ○○○대학교 ○○처장으로 계약 체결을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함), ㉢ ‘수익형 민자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보면 위 기숙사 BTO사업에 관해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의 의결을 득해야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취지로 추가 합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 청구인 스스로도 이 사건에서 위 기숙사 BTO사업 계약에 관해 이사회의 의결 및 관할청(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 그 계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으로 인해 학교 측이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 이사 ○○○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금원은 ○○○대학교 기숙사 BTO사업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 이사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보면, ○○○은 “저(○○○)를 대리하여 ○○○가, ○○○(청구인)를 대리하여 ○○○이 중간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에서 ○○○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 ○○○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7. 14. ○○○법원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기숙사 신축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배임 수재죄에 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4) 기숙사 BTO(Build - Transfer - Operate) 사업, 민간사업자 투자로 기숙사 건축완공 후 건물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되며, 민간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라)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대학교 ○○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교와 (주)○○○ 사이에 기숙사 BTO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3) 10년 무상 임대계약을 통해 학교에 손해를 끼침

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대학교 학생식당에 대해 (주)○○○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학에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의 경우, ○○○법원(2016고합○○ 판결)에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공소사실(업무상배임)에 대해, 학생식당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10년 무상 임대 계약으로 ○○○대학교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주)○○○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나)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 취지 고려할 때, ○○○대학교 학생식당에 대해 (주)○○○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학에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4) 금품수수 증거 조작 가담

가)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보면, (○○○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2,000만 원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그 돈은 청구인이 모두가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남동생 부인인 ○○○과 (주)○○○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와 ○○○은 서로 이미 협의를 다 끝냈는지 주로 저에게 부탁을 한 사람은 ○○○이었고, ○○○는 그냥 옆에서 저와 ○○○이 하는 대화 내용만 듣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0만 원 금품수수에 대한 허위의 증거를 만들기 위해 ○○○으로 하여금 ○○○과 (주)○○○ 사이에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교사 내지는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5) 소결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대학 학생식당에 대해 10년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대학에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1)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거나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 2) ①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상당부분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발생경위 및 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학교에서 연구와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청구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사명감, 성실성이 요구되는 점, ④ 청구인의 비위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아 ○○법원에서도 청구인의 배임수재 및 증거위조교사죄에 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상당부분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6

2015-○○○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요지 잦은 수업결강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였고, 학생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학점을 부여함

결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음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청 구 인 : ○○○

소속 ○○대학교 직위 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학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가. 수업결강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① 2013. 9. 29. 10:30 ○○○방법론, ② 2013. 10. 1. 10:35 교육방법론, ③ 2013. 10. 4. 18:45 ○○실습, ④ 2013. 10. 24. 09:30 ○○○방법론, ⑤ 2013. 10. 31. 11:20 ○○○방법론, ⑥ 2013. 11. 1. 11:30 ○○실습, ⑦ 2013. 11. 6. 19:54 ○○실습, ⑧ 2013. 11. 12. 10:31 ○○○방법론, ⑨ 2013. 11. 14. 11:47 ○○○방법론, ⑩ 2013. 11. 15. 11:41 ○○실습, ⑪ 2013. 11. 19. 10:23 ○○○방법론, ⑫ 2013. 11. 21. 10:21 ○○○방법론, ⑬ 2013. 11. 22. 12:13 ○○실습, ⑭ 2013. 11. 26. 10:13 ○○○방법론

나. 언론보도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청구인의 개인비리로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 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어(○○방송 2015. 3. 19., ○○신문 2015. 3. 24.) 학교와 구성원의 명예를 실추시킴.

다. 금품수수 및 항응관련 검찰기소 건(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2015. 6. 10.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됨.

라. 학생 신상 외부 유출(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2015. 7. 28. ○○○기자와의 인터뷰에 학생의 성적단표를 제출하여 화면에 노출시킴.

마.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진정서 및 자술서(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2015. 4. 8. ○○학과 졸업생·만학도, 2015. 6. 16. 총동문회장, 총학생회장 명의의 진정서가 총장에게 접수됨. 진정서 및 자술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업을 거의 하지 않고 시험평가도 없이 학생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금품(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외에도 (상품권 200만 원)을 해당 학생에게 받고 높은 성적을 주었음.

바. 성적조작 관련 비위행위(이하 '제6 징계사유'라 한다)

○○학과 학생들의 성적을 부여함에 있어 출석과 시험 등의 방법으로 성적을 공정하게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품과 접대를 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함.

사. 무책임한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학교와 학교구성원들이 출석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여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게 하고 학교가 이를 부담 수령하였다는 음해를 하여 학교와 구성원들을 부도덕 집단으로 전락시킴(이하 '제7 징계사유'라 한다).

아. 어떠한 근거도 없이 학교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타 기관에 제출하고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학교를 비방한 내용(이하 '제8 징계사유'라 한다)

자. 교원들에게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가지고 겁박한 사실(이하 '제9 징계사유'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 1) 제1 징계사유 중 ⑥ 2013. 11. 1. 11:30 ○○실습, ⑩ 2013. 11. 15. 11:41 ○○실습, ⑬ 2013. 11. 22. 12:13 ○○실습 수업의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 하에 수업시간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시간인 금요일 7, 8교시에 위 과목의 강의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2) ③ 2013. 10. 4. 18:45 ○○수업의 경우 청구인이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기다리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서 청구인이 임의로 결강하였다고 오인한 것이다.
- 3) ⑦ 2013. 11. 6. 19:54 ○○수업의 경우에는 이론 수업을 하는 경우 ○○실과 같은 층에 있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결강하였다고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 4) 나머지 ○○방법론과 ○○교육방법론 수업의 경우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징계사유로 인정한 횟수만큼의 결강을 한 바가 없다.

나. 제2, 3, 5, 6 징계사유에 관하여

청구인이 청구 외 ○○○, ○○○으로부터 2014. 5. 12. 및 2014. 11. 중순경 각각 100만 원권 상품권 1매(총 2매)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위 상품권이 든 쇼핑백을 받을 당시 그 안에 상품권이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미처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청구인은 ○○○, ○○○에게 부당하게 A+ 학점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출석한 사람이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업에서 출석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하게 학점을 부여하였다.

다.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2015. 7. 28.자 ○○뉴스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인적사항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정보가 노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라. 제7 징계사유에 관하여

청구인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발언한 부분 중 ○○대학이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진실된 사실이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게 하고 학교가 이를 부당 수령하였다는 진술은 위 인터뷰에서 한 바가 없다.

마. 제8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특정되어 있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바. 제9 징계사유에 관하여

청구인은 탄원서 제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청구 외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했을 뿐, 교원들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겁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제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업결강확인에 따른 확인서 및 사유서, ○○○학과 졸업생·만학도 진정서, 학과장 사실확인서, 외래강사 ○○○ 시간표의 각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1 징계사유의 기초사실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수업을 결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강의시간표, 교수개인별 강의시간표의 각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이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업시간을 변경했다거나, 다른 강의실에서 실제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제2, 3, 5, 6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청구인이 배임수재 혐의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고, 제2 징계사유는 청구인의 이 부분 혐의에 대하여 언론보도가 되었다는 것이며, 제5 징계사유는 청구인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졸업생·만학도, 총동문회장, 총학생회장의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는 것이므로 제2, 3, 5 징계사유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징계사유라 할 것이다. 또한 제6 징계사유는 청구인이 금품을 수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제2, 3, 5 징계사유를 기초로 하고 있어 함께 살피기로 한다.

○○○, ○○○의 각 진술서, ○○○, ○○○의 각 성적증명서, 외래강사 사실확인서, ○○신문 및 ○○방송 각 보도내용, 법원재판진행 내용, ○○○의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 ○○○이 2014. 5. 12. 청구인과 함께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위 식사자리에서 ○○○이 청구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고, ○○○은 15만 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결제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피청구인에게 진술한 사실,

② ○○○, ○○○이 2014. 6. 30.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청구인의 연구실에서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피청구인에게 진술한 사실,

③ ○○○, ○○○이 2014. 10. 23.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식당에서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피청구인에게 진술한 사실,

④ ○○○, ○○○이 청구인으로부터 수강한 2014학년도 1학기 ○○프로그램 과목에서 A+학점을 받은 사실,

⑤ ○○○, ○○○이 청구인으로부터 수강한 2014학년도 1학기 ○○프로그램 과목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르거나,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⑥ ○○대학의 총학생회장이 2014. 12.경 청구인의 배임 수재 혐의에 대한 진정서를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고, 진정서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총 3차례에 걸쳐 ○○○ 및 ○○○으

로부터 100만 원의 현금과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혐의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고, 졸업생·만학도, 총동문회장, 총학생회장의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결국 제2, 3, 5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 ○○○이 청구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는바, 청구인과 ○○○, ○○○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달리 위와 같은 고가의 금품을 청구인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금품은 높은 학점 부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경험칙 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제6 징계사유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의 출결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좋은 학점을 부여하였을 뿐, 금품 수수와 학점 부여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 ○○○은 청구인의 수업에 제대로 출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유 없다.

3)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청구인이 2015. 7. 28. ○○뉴스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성적단표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에서 보도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학생들의 성적단표가 위 뉴스를 통해 모자이크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은 학생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는 등의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성적단표를 기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제7 징계사유에 관하여

먼저 청구인이 “학교가 출석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출석 처리를 하게 해 주고 성적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나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인터뷰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에 대한 진술조서에서 “원래 ○○대가 등록만 해 놓고 학교는 오지 않아도 나중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학교라고 들었고, 그래서 졸업장만 필요한 사람들이 등록만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수업 받을 때 본 사람들은 6~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학점을 부여하였다는 사실 또한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인터뷰 내용은 진실하거나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목적 또한 주요한 목적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학교가 출석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출석 처리를 하게 해 주고 성적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은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내용 또한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도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출결에 대한 내용을 넘어 “학교가 국가장학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는 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제8 징계사유에 관하여

제8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학교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타 기관에 제출하고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학교를 비방하였다.”고 기

재되어 있고,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제8 징계사유의 대상이 된 비위행위의 시기, 내용, 방법 등이 전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청구인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충분히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소청심사 단계에서 제8 징계사유가 교육부, 국가권익위원회, 신문고,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했던 청구인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징계의결 요구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사유를 소청심사 단계에서 보완하는 것은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6) 제9 징계사유에 관하여

제9 징계사유는 청구인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교원들을 겁박하였다는 것인데, 징계의결 요구서의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의 어떠한 행위가 교원들을 겁박한 것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징계사유가 청구인이 교직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대화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고자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에 대한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교원을 겁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제9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거나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기는 하나, 주된 징계사유인 금품 수수 및 금품 수수에 따른 부당한 성적 부여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청구인이 수수한 금품이 3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고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의 잦은 결강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파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적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기초로 했을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파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7

2016-○○○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요지 학부모로부터 3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함

결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음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청 구 인 : ○○○

소속 ○○고등학교 직위 교사

피청구인 : 학교법인 ○○학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청구인은 민원인(0학년 ○○○의 부모)으로부터 2015. 3월, 5월, 7월 3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현금 총 300만 원을 수수하고, 2015. 6월 60만 원 상당의 황진단을 수수하여 총 36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확인한바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되어 해임을 의결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의 하자

징계위원회에서 교장과 교사위원은 모두 정직 징계처분 의견을 개진하

였는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해임 징계처분 의견을 개진하여 표결도 없이 해임결정을 한 것은 「사립학교법」제66조의 징계의결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년도에 ○○○고등학교 0학년 0반 담임을 맡고 있었는데, 반장 ○○○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3월, 5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각 10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을 제과점 종이가방에 넣어 가져 온 것과 택배로 보내온 황진단(시가 60만 원 상당)을 받게 되었다.

본 사건은 2015. 9.경 수사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응시하려던 ○○○ 학생이 ○○○, ○○○ 선생에게 추천서를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양심을 품고 학교에 촌지수수 사실을 알리고 교사들의 사표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결코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가 의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 학생의 부친이 요구한 대로 2015. 9. 7. 촌지로 받은 360만 원을 전액 계좌 입금하였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청구인은 ○○중학교를 시작으로 교직 24년 동안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학생을 지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2021. 9.부터 25% 삭감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2학년 부장 ○○○는 감봉 1개월, 1학년 담임 ○○○은 감봉 2개월, 2학년 담임 ○○○은 감봉 3개월의 경징계 결정을 한 반면 청구인만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의 하자

청구인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해임 징계처분 의견을 개진하여 표결도 없이 해임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사립학교법」제66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제66조(징계의결) 제2항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피청구인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청구인에 대해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해임으로 심의·의결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청구인이 ○○○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2015년 3월, 5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각 100만 원씩 총 300만 원과 60만 원 상당의 황진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은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수수한 360만 원을 전액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학부모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청구인이 수수액을 학부모에게 반환한 것도 ○○○ 학생 학부모의 요구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며, 위와 같은 청구인의 금품 수수 행위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1) 징계권자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 내지 강등 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며, ○○○교육청의 '2015년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에 따르면 불법 찬조금 적발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10만 원 이상 촌지를 받은 경우 파면·해임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원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징계위원회에서 2학년 부장 ○○○는 감봉 1개월, 1학년 담임 ○○○은 감봉 2개월, 2학년 담임 ○○○은 감봉 3개월의 경징계 결정을 한 반면 청구인에게만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다른 교사의 경우 금품수수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이며, 청구인의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8

2015-○○○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요지 교직원에게 사적 업무를 강요하고,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하였으며, 폭력을 행사함

결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청 구 인 : ○○○

소속 ○○초등학교 직위 교사

피청구인 : ○○○교육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 가. 청구인의 남편과 공·사적 만남을 일부 교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하였음에도 이를 직접 조장하거나 방관하였으며, 직위를 남용하여 사적 심부름, 개인물품을 구입해 오도록 한 후 비용 미지급, 선물 및 음주 강요 등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 나. 2013년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부 교직원에게 이자 없이 금전을 차용하여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 다. 2014. 12. 19. 교직원 워크숍 과정 중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서 직원들이 보이지 않아 숙소로 도착하여 연구부장과 교무부장이 사용하는 숙소로 들어가 “너희들이 교장 알기를 우습게 알아” 등의 발언을 하였고, 현관입구에서 신발을 신은 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라. 위 사건으로 ○○○ 연구부장은 ‘타박상 및 염좌’ 등 외상으로 2주 진단, ○○○ 교무부장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전치2주 이상의 치료소견을 받았으며, 동 사건이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혼자 부임하여 관사에서 생활하는 선생님들에게 격려차원에서 청구인의 남편과 저녁식사를 하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강제성이 없었으며, 부담스러운 상황을 조장하거나 방관한 사실이 없었다.

나. ‘사적 심부름’ 부분은 교사들의 뜨개질 동아리 활동과 관련한 택배물품을 찾아오라는 것이었으며, 저지방 우유를 구입하려고 ○○○ 교사가 마트에 들른다고 하여 물건 값을 봉투에 넣어두었으나 다음날 보니 쇼핑백에 그 봉투가 그대로 있어 돈을 받으라고 하였으나 받지 않은 것이며, 핸드폰 케이스 구입의 경우 ○○○ 교사가 ○○○ 교사를 불러 사오게끔 한 것으로, ○○○ 교사에게 물건 가격을 물으니 선물이라며 받지 않았다.

다. ‘선물 강요’ 부분은 어린이날 ○○○ 교사가 양말이랑 선물을 하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하여 청구인이 ‘앞으로 물건이 오면 원장인 나에게 줌 보여 달라’고 하며 ‘아이들한테만 선물주고 원장한테는 왜 없어, 작년에는 나도 선물 받았는데’라는 농담을 한 것이다.

라. ‘음주 강요’ 부분은 ○○○ 교감에게 소주 반잔 정도의 맥주를 따르고 나서 술잔이 오질 않아 교감이 술을 못 마신다고 하여 ‘물에 희석해서 마시던지, 버리던지’ 했더니 맥주를 다 버리고 물을 섞어서 마시고 술잔을 청구인에게 준 것으로 이를 음주 강요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금전 차용’ 부분은 ○○지역에 금융기관이 농협뿐이라 지인이 100만원 차용을 부탁하여 농협 잔고가 없어 ○○○ 부장에게 빌려 다음날 반환하였고, 또 ○○○ 부장에게 200만원, 영어강사 ○○○ 에게 99만원을 빌린 것은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입금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갚아야 할 대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 위 2명에게 각 3일과 7일 후에 반환하였다.

바. ‘워크숍 관련 교직원 폭행’ 부분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그 잘못에 대하

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청구인이 학교생활을 하며 가족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노력들이 허사가 된 것 같아 외로움과 배신감이 들어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 선생님들에게 사과를 하였고,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처분 한 것은 과중하다.

3. 판단

가.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1979. 3. 5.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2. 3. 1. 교장으로 승진하여 ○○초등학교에 근무하였다.
- 2) 2014. 12. 19. 청구인은 교직원 워크숍 뒤풀이 과정에서 동료 교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2014. 12. 22., 2014. 12. 24.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은 사안보고서를 각각 접수하였다.
- 3) 2014. 12. 24. 뉴스와 언론에 노래방 여교장 폭행사건이 전국에 보도가 되었고, 피청구인은 2014. 12. 25.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을 사유로 청구인을 직위해제하였고, 2015. 1. 27. 중징계 요구를 하여 2015. 2. 10. 해임처분을 하였다.
- 4) 청구인은 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3. 11. 동 소청 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1) 일부 교직원들이 청구인의 남편과 공·사적 만남을 부담스러워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조장하거나 방관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사 ○ 모의 확인서에 의하면 술을 따르는 과정에서 본인이 술을 못 마셔 항상 음료수로 받는데 청구인의 남편은 “일단 받아라! 받고 나서 마시든 안 마시든 그건 니 마음대로 해라”고 하고, 인근학교에 초등교사로 근무하는 남편을 거론하며 “대체 언제 술 한잔 하러 오는 것이냐”고 말하는 등 2013년 9월부터 거의 모든 학교 회식자리에서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어 불편함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

구인 또한 청구인 남편의 워크숍 참석에 대해 “전체 교직원들에게 양해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진술한 점에 미루어 청구인은 공·사의 구별 없이 청구인의 남편을 교직원들과 동석하게 하여 부담을 준 것이 사실로 인정되는 바, 격려차원에서 가깝게 지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위를 남용하여 사적 심부름, 개인물품을 구입해 오도록 한 후 비용 미지급, 선물 및 음주 강요 등의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가) ‘사적 심부름’ 부분에 대하여

영어회화 강사인 ○○○ 와 특수교사인 ○○○ 교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동안 교장의 개인적인 택배를 보내고 찾아오는 심부름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수업 중간에 인터폰으로 찾아오라고 재촉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사적 심부름을 일 년 동안 5~6차례 이상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과의 문답과정에서 ‘생수가 없을 때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적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인 물품 구입 후 비용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 교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교장선생님이 저지방우유, 삼다수, 락스, 휴대폰케이스 등 3~4회에 걸쳐 개인물품을 심부름 시키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사서 내일 출근 시 가져오라고 하였고, 얼마냐고 묻는데 괜찮다고 하자 돈을 안 주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

다) ‘선물 및 음주 강요’ 부분에 대하여

○○○ 교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4. 9. 17. 회식자리에서 (청구인인) ○○○ 교사는 ○○○을 2박스 보냈던데, 너는 나한테 추석에 뭐 줬어? 라며 선물을 강요하였고, 이후에도 몇 번이나 추석선물을 안 줬다고 원장(청구인)한테 뭐 해줬냐”고 진술한 사실과, 교감 ○ 모의 확인서와 피청구인과의 문답과정에서 청구인은 “교감이 술을 정말 못 마신다고 해서 이유를 모르고 소주잔에 따르고 한번만 마셔 보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교감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로 미루어 음주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피청구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유 있다.

- 3) 2013년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수차에 걸쳐 일부 교직원에게 이자 없이 금전을 차용하여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 교사 등 6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 명의 교직원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하였으나 빌리지 못하였고, 2014. 2월과 8월에 ○○○ 교사에게서 100만원과 200만원을 차용한 사실(○○○ 교사와 청구인과의 금전거래 내역서로 확인됨)과, ○○○ 영어강사에게서 99만원을 차용한 사실(청구인도 문답과정에서 인정)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의 ‘공무원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유 있다.

- 4) 2014. 12. 19. 교직원 워크숍 행사 과정 중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청구인도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청구이유에서 워크숍 관련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청구인과의 문답과정에서 “우발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었고, 동 건으로 언론 보도된 사실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피청구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유 있다.

다. 징계양정 적정 여부

청구인이 워크숍 일과 중 교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 직원들에게 금전 차용, 직위를 남용하여 사적 심부름, 선물 및 음주 강요 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표창 감경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워크숍 과정에서 교직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 선물 및 음주 강요, 금전 차용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양정 또한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9

2015-○○○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요지 학부모들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음

결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청 구 인 : ○○○

소속 ○○초등학교 직위 교사

피청구인 : ○○○교육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1) 청구인은 2015. 4. 7. 16:00경 본인이 담임으로 있는 ○○초등학교 0학년 0반 교실에서 ○○○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미용실 이용권(무료 펌 시술권)을 수수하는 등 2010. 10.말부터 2015. 4.까지 학부모 8명으로부터 합계 3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받았다.

2)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표 1] 청구인의 금품수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일시	금품 구분	금액	제공인		세부내역	비고
				학생	학부모		
1	20** .10.말	현금	500	○○○	모	1만 원권 50매	
2	20** . 2.초	현금	200	○○○	모	1만 원권 20매	
3	20** .12.중	현금	300	○○○	모	1만 원권 30매	
4	20** .12.중	현금	200	○○○	모	1만 원권 20매	
5	20** .12.중	현금	500	○○○	모	1만 원권 50매	
6	20** . 2.중	현금	1,000	○○○	모	5만 원권 20매	
7	20** . 4.중	상품권	250	○○○	모	미용실 상품권	
8	20** . 5.중	상품권	300	○○○	모	롯데 상품권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3,250	최종 징계부가금 부과 금액 9,750 (대상금액의 3배)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의도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금품수수 시기가 대부분 학기말로 이를 대가로 해당 학생에 대하여 불공정한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었던 점, 상기 “[표] 청구인의 금품수수 현황”은 본인의 자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학부모가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확인서에 따라 수정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220만 원(미용실 이용권을 제외한 금액)이며, 해당 학부모들에게 동 금원을 되돌려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비위행위는 의례적인 금품수수에 해당하고 수동적인 수수행위로서 금액이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느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감봉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표 2] 학부모의 확인에 따른 청구인의 금품수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일시	금품 구분	금액	제공인		세부내역	비고
				학생	학부모		
1	20** .10.말	현금	500	○○○	모	1만 원권 50매	
2	20** . 2.초	현금	200	○○○	모	1만 원권 20매	
3	20** .12.중	현금	-	○○○	모	1만 원권 30매	
4	20** .12.중	현금	-	○○○	모	1만 원권 20매	
5	20** .12.중	현금	500	○○○	모	1만 원권 50매	
6	20** . 2.중	현금	1,000	○○○	모	5만 원권 20매	

연번	일시	금품 구분	금액	제공인		세부내역	비고
				학생	학부모		
7	20**. 4.중	상품권	-	○○○	모	미용실 상품권	
8	20**. 4.말	상품권	-	○○○	모	○○ 상품권	
합 계			2,200				

3. 판단

가.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청구인이 ○○○ 학생의 어머니 외 3인으로부터 총 22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위 220만 원을 제외한 금품(105만 원)에 대하여는 수수하지 않았거나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의 어머니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본인 책상 위에 쇼핑 백 하나를 올려놓으시면서 ‘빵이니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백을 두고 나갔는데… 롤 빵 밑에 봉투가 하나 있어 본인이 봉투 속을 확인한 결과 1만 원권 지폐 30매… 이를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비위사실을 진술하였고, “○○○ 학생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위 현금 3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의 어머니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최초 진술 시 확인서(2015. 4. 10.)에서 “2012학년도에는 0학년 0반 담임을 맡았는데, 그 해 학기말인 12월 중순 오후 2시경 ○○○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 상담을 요구하여 상담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이 잘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음료수 드십시오.’라고 하면서 놓고 간 음료수 안을 보니 봉투가 하나 꽂혀 있어 확인한 결과 1만 원권 지폐 20매, 200,000원이 들어 있어 이를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비위사실을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의 어머니로부터 미용실 이용권 25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동 이용권은 미용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수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의하면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금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동 이용권을 금품으로 보지 아니할 근거가 없는 점, 동 이용권의 제공을 의례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이 ○○○의 어머니로부터 상품권 30만 원을 받을 당시 금품 수수를 거부하였고, 감사관이 현장을 급습함에 따라 청구인이 반환할 기회를 놓친 것이므로, 동 상품권은 이 사건 수수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련 자료에서 “2015. 4. 9. 14:20경 ○○○의 어머니와 상담 후 상품권(10만 원권 3매)을 받아 본인의 개인 사물함에 넣어 두었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다.”, “○○○ 학생의 이모 ○○○에게 상품권 3장(30만 원 상당)을 학교에서 되돌려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상품권을 수수할 당시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위 105만 원을 포함하여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유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청구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정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바, 위 금액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에 관하여 1~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3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학부모들부터 금품을 받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바,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할 것이고, 또 청구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10

2015-○○○ 견책처분 취소 청구

처분 요지 교직원에게 금품 수수

결정 요지 처분 사유는 사실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원 처분은 과중하지 않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청 구 인 : ○○○

소속 ○○초등학교 직위 교장

피청구인 : ○○교육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동 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하 ‘○○○’)으로부터 2014. 8월 말경 ○○ 향수(구입가 121,375원)와 ○○ 화장품(구입가 70,142원), 2014. 12월 초순경 ○○ 장지갑(구입가 480,000원)을 받고, 2014. 12. 12. 남직원들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는 등 총 690,510원의 향응을 수수하였음에도,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환 조치하지 않은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1,381,02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이 사건 ○○○과 그 배우자로부터 선물들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동 선물들을 요구하거나 수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과 그 배우자가 억지로 두고 간 것이며, 동 선물들 중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 나. 청구인이 소속 학교 남자선생님들과 저녁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와 관련한 토의를 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청구인이 노래방에서 노래값 명목으로 낸 20,000원은 1인당 산출액(19,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당일 전체 비용에 합산되어 지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19,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1977. 3. 20. ○○교육청 초등교사로 신규 임용되었으며, 2010. 3. 1. 교장으로 승진하여 2013. 9. 1.부터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 2) 국민권익위원회는 ○○○으로부터 동 학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한바, 청구인이 총 690,510원의 향응을 수수하여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제2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을 위반한 사실을 2015. 4. 7. ○○교육지원청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하였다.
- 3) ○○교육지원청은 2015. 2. 6. ○○○으로부터 청구인의 금품수수 혐의 등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2015. 2. 12.~2015. 3. 13.)한바,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총 690,510원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5. 20. 피청구인에게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다.

- 4) 이에 피청구인은 2015. 6. 16. 청구인에 대하여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 징계위원회는 2015. 8. 18.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로 의결하였다.
- 5) 피청구인은 2015. 8. 28. 청구인에게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처분하였다.

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1)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4. 7. 청구인의 행동강령 위반 내용을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2014. 12월 초순경 소속 학교 교장실에서 신고자(○○○)로부터 ○○ 장지갑(구입가 480,000원)을 받은 사실, 2014. 8월 말경 소속 학교 교장실에서 신고자(○○○)로부터 향수(구입가 121,375원)와 ○○ 화장품(구입가 70,142원)을 받은 사실, 2014. 12. 12. 송년회 모임에 참석하여 신고자(○○○) 등으로부터 19,000원 상당의 향음(식사 접대)을 받은 사실을 비위행위로 인정하였다.
- 2) 청구인은 이 사건 ○○○과 그 배우자로부터 선물들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이를 요구하거나 수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동 선물들 중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반환하였으므로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의하면,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 선물들을 받은 즉시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청구인이 노래방에서 이 사건 식사 대접 비용(19,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0,000원)을 냈으므로 본인이 받은 식사 대접은 향음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노래방에 동석한 교사 ○○○이 ‘노래방 비용(4만 몇 천 원 정도)의 계산은 노래점수 100점을 맞은 사람이 만 원 씩 내기로 하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100점을 맞은 4명이 낸 4만 원과 남직원들의 회비로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노래방에서 낸 금액이 20,000원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00

원을 냈다 하더라도 동 금원은 징계사유(식사 접대)와 무관한 노래방 비용으로 지출되었는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따라서, 청구인이 ○○○ 등 교직원들로부터 향수, 화장품, 지갑, 식사 대접 등 총 690,510원의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수한 즉시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유 있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 등 교직원들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교직원들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견책 처분이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금유용

1건

사건 1

2016-○○○ 해임 및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처분 요지 교원노조 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등 유용함

결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청 구 인 : ○○○

소속 ○○○고등학교 직위 교사

피청구인 : ○○○교육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청구인은 2008. 9. 1.자로 한국교원노조 ○○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2004. 12. 30. ○○○교육청에서 한국교원노조 ○○본부에 노조 사무실 임차비용 명목으로 지원한 간접보조금 2억 원을 전임 본부장으로부터 인수받고,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① 2011. 3. 7.경 위 ○○본부 사무실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을 2억에서 1억 원으로 변경하고, 매월 9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차액 1억 원 중 4,740만 원은 본인이 차용한 금액의 변제로 상계하고, 미납 월차임을 제외한 5,000만 원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총 9,74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② 2014. 4. 30.경 위 ○○본부 사무실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변경하고 매월 11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차액 5,000만 원 중 미납 월차임 합계 9,643,000원과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월차임 합계 13,200,000원을 제외한 27,157,000원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총 40,357,000(선수금 월차임 13,200,000원 + 계좌입금분 27,157,000원)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교육청이 교부한 간접보조금 2억 원 중 1억 3775만 7천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면담 및 자체 소명 절차를 생략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청구인은 징계위원들 중 기피할 위원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무실 임차 보조금 일부를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나, 보조금 중 59,633,000원을 사무실 월세, 부가세, 관리비로 사용하였고, 83,589,022원을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사무실 운영비 및 다문화교육활동지원비로 사용하여,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36년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교육부장관 표창 및 각종 포상을 다수 수상했으며, 성실하게 봉직을 수행해 온 사실을 감안하여 징계 양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

3.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유무

-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면담 및 자체 소명 절차를 생략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문답 및 최후 변론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징계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하여 징계위원들 중 기피할 위원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회의 진행시 징계위원 기피 절차를 거친 점이 확인되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1)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① 피청구인이 2004. 6. 25.경 한국교원노동조합 ○○본부(이하 '○○본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04. 12. 30.경 국가보조금을 일부 재원으로 하여 노조사무실 임차료 지원금 명목으로 ○○본부에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② ○○본부가 ○○○ 소유의 ○○빌딩 402호를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지원금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청구인이 2008. 9. 1. 한국교원노조 ○○본부장으로 취임하여 2010. 12. 15.경 위 빌딩 402호에 대한 임차인이 된 사실, ④ 청구인이 2011. 3. 7.경 위 ○○본부 사무실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을 2억에서 1억 원으로 변경하고 매월 9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차액 1억 원 중 9,740만 원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 ⑤ 청구인이 2014. 4. 30.경 위 ○○본부 사무실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매월 11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차액 5,000만 원 중 40,357,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 ⑥ 청구인이 2015. 7. 31. ○○지방검찰청으로

부터 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구공판 처분을 받고, ○○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1. 1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사실

- 2) 다만,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사무실 월세, 사무실 운영비 및 다문화교육 활동지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지방법원은 “①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이 2004. 12. 30.경 ○○본부에 조합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면서 ‘2억 원은 사무실 임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무실 임차 원인이 소멸될 경우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③ 청구인이 2011. 1. 24.경 ‘피청구인이 지원한 사무실 임차비용을 사무실 임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사무실 임차보증금 원인이 소멸될 경우 2억 원 전액을 즉시 피청구인에게 반환할 것을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하여 피청구인에게 주었던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간접보조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월세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설령 청구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아 이를 월세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간접보조금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사하였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 의한 국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의 취지 및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사무실 월세, 사무실 운영비 및 다문화교육 활동지원비로 사용하였다더라도, 이를 간접보조금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없으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국가보조금을 전용하여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1) 징계권자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① 성실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구체적 비위유형이 ‘공금횡령·유용’이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파면 내지 해임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참조), ② 청구인은 교사로서 엄격한 성실 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규모의 보조금을 횡령·유용하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③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의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정 여부

-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노조 사무실 임차비용 명목으로 지원된 보조금 중 137,757,000원을 횡령·유용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바, 위 금액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서 공금 횡령·유용에 관하여 1~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3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록

1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Q&A)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Q1

유치원 원장, 교사와 기간제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A.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도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그 소속 원장, 교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원(「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2

담임교사가 원생(학생)의 생일을 맞이하여 원생(학생)들에게 음료수와 과자를 줘도 된다?

A. 유치원생(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선물을 줘도 됩니다.

Q3

담임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케익,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A.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받아서는 안됩니다.

Q4

원생(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의 시설에서 무료 입장을 제공하는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A. 원생(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원생(학생)의 지도·인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장하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무료입장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Q5

원생(학생)·학부모가 작년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은 받아도 된다?

A. 현재 담임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아도 됩니다.

Q6

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원생들(학생들)·학부모가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

A. 원생들(학생들)·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Q7

상급 교직원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 하급 교직원들이 모아서 주는 100만원의 전별금을 받아도 된다?

A. 금전은 선물이 아니므로 전별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Q8

유치원 원장·교사는 현장학습, 체험학습을 가는 날 학부모에게 교사용 도시락, 다과 등을 요청할 수 있다?

A. 유치원 원장·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Q9

동료 교직원이 주는 자녀 돌반지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A. 동료 교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받아도 됩니다.

Q10

담임교사는 졸업식날 원생들(학생들)·학부모로부터 꽃다발을 받아서는 안된다?

A. 졸업식날 담임교사가 원생들(학생들)·학부모가 제공하는 꽃다발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Q1

방과후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A. 방과후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A.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이 적용됩니다.

Q3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코치·감독에게 지도학생(학부모)이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A. 지도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Q4

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된다?

A.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됩니다.

Q5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 기프트콘 등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A.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Q6

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학생들(학부모)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

- A.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 학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Q7

학생(학부모)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

- A. 현재 담임교사, 교과목 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0만원)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Q8

교과목 담당교사인 기간제교사의 생일에 5만원짜리 상품권 선물은 드려도 된다?

- A. 기간제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고, 학생의 성적 평가 등을 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드려서는 안됩니다.

Q9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서는 안된다?

-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능시험 격려를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도 됩니다.

Q10

졸업식날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

- A. 졸업식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대학 교수·직원)

Q1

동료 교직원 자녀의 돌잔치에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까지는 제공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선물을 받는 교직원이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농축수산물은 1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법제8조 제3항 제2호)

※ 인사·평가·감사 기간에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목적범위를 벗어나므로 5만원 이하의 선물도 제공할 수 없음

※ 청탁금지법 상 경조사는 결혼, 장례에 한정되며, 돌잔치는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은 제공할 수 없음

Q2

국·공립 대학 교수가 외부강의를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18. 1. 1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교 교수는 국·공립과 사립에 관계없이 시간당 100만원 까지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고, 총액 제한은 없습니다.(시행령 별표2)

※ 다만, 소속기관별 행동강령의 사례금 상한액이 더 엄격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소속 기관의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Q3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조교가 공직자에 해당하나요?

A. 조교만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고등교육법」에서 명예교수, 겸임교수, 외래교수, 시간강사 등은 '교원' 외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에서 '교직원'으로 정하고 있는 조교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법제2조제2호)

※ 대학의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19.1.1.예정)되어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면 공직자에 해당할 수 있음

Q4

교수가 논문심사를 하고 있는 다른 대학원 학생으로부터 논문심사 중에 도시락 세트를 받아도 될까요?

A. 안됩니다.

심사대상자로부터 법정 심사료가 아닌 식사 등을 받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고·의례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Q5

교수가 본인의 강의를 평가하는 학생에게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

A.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금품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제공하는 간식이나 식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제8조)

※ 다만,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할 당시의 교수와 학생간의 상황,제공방식과 목적 등에 따라 '18.4.17. 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행동강령」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

Q6

교수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개최하는 사은회에 참석하여 식사나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A. 가액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모두 종료된 후 사은회가 열린 경우라면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식사와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라면 합산해서 5만원 이내여야 하고, 식사 3만원과 선물 5만원 각각의 가액 범위를 넘을 수 없음

Q7

교수가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제공하는 식사나 선물을 받아도 될까요?

A. 졸업생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졸업한 학생과 교수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졸업생이 제공하는 식사나 선물(100만원 이하)은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2항)

※ 다만, 상시 지도·평가의 대상인 재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선물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될 수 없습니다.(법제8조제3항제2호)

따라서,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졸업생이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식사나 선물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졸업생이 재학생에게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함께 교수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한다면 재학생분 아니라 위반행위에 가담한 졸업생도 제재 대상에 해당(과태료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2조, 형사처벌 대상은 「형법」제30조 적용)

Q8

교수가 소속 학교 총장에게 상품권을 선물해도 될까요?

A. 안됩니다.

‘18.1.1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품권, 공연티켓, 기프트콘 등의 유가증권은 금전과 같이 취급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1)

부록



관련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2016.11.0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들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들의 의무) ① 공직자들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들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들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들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공직자들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4183호, 2016.5.29.〉 (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법률 제13278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17.] [대통령령 제28590호, 2018.1.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②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금품등 수수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강의·강연·기고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들의 청렴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제8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2. 수사기관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제10조(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③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4조(종결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5. 금품등의 반환 여부
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들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과 확인 사항 및 처리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들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 ②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③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들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

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이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3조(증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증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금품등과 제1항에 따라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첨부하여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조사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2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 ② 조사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조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

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장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②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35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들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7.>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 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2.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부칙 〈제28590호, 2018.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시행 2016. 9. 28.]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08호, 2016. 9. 2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등

제3조(신고 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 ①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신고기록) ①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6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보완)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취소)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처리)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 제9조제1호가목,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6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 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한 자가 별지 제17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18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8호,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렴의무위반 소청사례집

발 행 일 2018년 9월
발 행 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Tel. 044) 203-7441
Fax. 044) 868-8127
누 리 집 www.ace.go.kr
인쇄 및 제작 경성문화사

